

의안번호	2210764
의 퇴 인	용혜인의원
회 답 일	2025.7.14.
추계번호	25D3143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화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1억 8,300만원, 2027년 3억 5,200만원 등 2년간 총 35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회의참석수당	153	72	225
공론화 용역비	2,471	—	2,471
공론화위원회 운영비	559	280	839
합계	3,183	352	3,535

주: 본 추계는 국가기관 차원에서 설치·운영한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기본소득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방식 등을 다르게 적용하면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기본소득 공론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둠(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제2항) 1.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정보의 작성·공개·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공론화와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회의 및 활동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시민참여단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여론조사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7.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 8. 기본소득 공론화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1항), 위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하는 20명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제2항) 1.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의무규정

		2. 국회의 교섭단체 정당이 공동 추천하는 12명 3. 국회의 비교섭단체 정당이 공동 추천하는 5명	
3	안 제12조(공 론화지원단)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기본소득공 론화지원단을 두며(제1항), 공론화지원단에 지원단장 1명 을 두고, 지원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제2항)	의무규정
		지원단장은 공론화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13조(시 민참여단)	위원회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제1항),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의견을 분석하고, 그 의견을 공론화의 최종 결과 도출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제2항), 시민참여단 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14조(공 청회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 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5조(자 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 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1항), 자 문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 원장이 위촉함(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6조(조 사·연구 의 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사 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제1항),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17조(여 론조사)	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제1항), 효율적인 여론조사를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19조(위 원 등의 수당·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시민 참여단 등에게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21조(기 본소득 공론 화 실시기간)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180일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의무규정 재량규정
11	안 제22조(기 본소득 공론 화 실시 방법 등)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본소득 공론화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론화를 권역별로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12	안 제26조(재 정지원)	정부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7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2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	
3	안 제12조(공론화지 원단)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지원단장을 겸임하며, 단원은 갈등관리과 소속 직원과 유관 부처의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
4	안 제13조(시민참 여단)	○	
5	안 제14조(공청회 등)	○	
6	안 제15조(자문위 원회)	○	
7	안 제16조(조사· 연구 의뢰)	○	
8	안 제17조(여론조사)	○	
9	안 제19조(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	
10	안 제21조(기본소득 공론화 실시기간)	○	
11	안 제22조(기본소득 공론화 실시 방법 등)	○	
12	안 제26조(재정지원)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 추가재정소요는 국가기관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사례를 참고하여,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함)의 회의참석수당, 공론화 용역비용(여론조사, 공론화 실시), 공론화위원회 운영비용(교육홍보, 조사연구, 운영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공론화위원회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소속 위원 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다만, 자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5조¹⁾에서 공론화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교섭단체 공동 추천 12명, 비교섭단체 공동 추천 5명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함
 - 공론화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25회(기존 공론화위원회 회의횟수 평균)로 하며,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과 기존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회의참석수당 15만원, 안전검토비 30만원 등 1일당 45만원으로 가정함

[표 2] 국가기관 차원에서 설치·운영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횟수

구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특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특위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특위	경인아라뱃길 공론화특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특위	연금개혁 공론화특위(국회)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가교육회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연금개혁특위)
운영 기간	'13.10.~'15.6.	'17.7.~'17.10.	'18.4.~'18.8.	'18.10.~'21.2.	'19.5.~'21.4.	'24.1.~'24.4.
위원회 구성	15명 (위원장 1명 포함)	9명 (위원장 1명 포함)	7명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위원장 1명 포함)
회의횟수 (전체회의)	38	14	14	30	43	9

자료: 각 부처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론화 용역비용은 ‘시나리오 워크숍’과 ‘시민참여형 조사’가 결합되어 진행되었던 3개 공론화(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연금개혁 공론화) 용역비용의 평균(2,471,434,00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 공론화 용역비용은 의제의 복잡성과 난이도, 공론화 기법, 공론화의 설계 방식에 따라 비용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남
 - 본 추계에서는 한국형 공론조사 모델로 설계·활용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특위,

1)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하는 20명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2. 국회의 교섭단체 정당이 공동 추천하는 12명
3. 국회의 비교섭단체 정당이 공동 추천하는 5명
2)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국회)의 공론화 용역비용의 평균을 적용함

[표 3] 시나리오 워크숍과 시민참여형 조사 결합 공론화 용역

구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국회)
공론화 기간	'17.8.~'17.10.	'20.4.~'20.12.	'24.2.~'24.4.
공론화 용역비	26억 3백만원	23억 4,800만원	24억 6,300만원

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용역비는 전국 시민참여단(596명)의 공론화 용역비임
자료: 각 부처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론화위원회 운영비용(교육홍보, 조사연구, 운영비)은 3개 공론화위원회(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전체 예산 집행액 대비 운영비용의 비중(23.74%)을 적용하여 추정하되, 본 추계에서는 공론화 용역은 2026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공론화위원회 전체 예산집행액 대비 운영비용 비중

(단위: 천원)

구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국회)	합계
예산 집행액	회의참석수당	56,700	379,951	47,900	484,551
	공론화 용역비	2,603,229	3,296,774	2,462,860	8,362,863
	운영비용	1,067,098	1,677,145	9,525	2,753,768
	합계	3,727,027	5,353,870	2,520,285	11,601,182
운영비용 비중		28.63%	31.33%	0.38%	23.74%

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용역비는 전체 공론화 용역비임
자료: 각 부처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안 제21조는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³⁾,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과 2027년 2년으로 함

3) 제21조(기본소득 공론화 실시기간)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안 제4조, 제5조 및 제19조)

- 회의참석수당은 공론화위원회의 민간위원 수에 회의일수와 회의참석수당을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안 제5조는 공론화위원회를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론화 위원회는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가정함
 - 회의참석수당은 1인 1회당 45만원 지급하고, 회의는 추계기간 동안 총 25회(2026년 17회, 2027년 8회)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공론화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5] 공론화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구분		2026	2027	소계
회의참석수당	지급인원(A, 명)	20	20	—
	지급단가(B, 천원)	450	450	—
	회의일수(C, 일)	17	8	25
	소 계 (D=A×B×C, 백만원)	153	72	2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공론화 용역비용(안 제13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2조)

- 공론화 용역비용은 다음의 3개 공론화 용역비용 평균액(2,471백만원)을 그대로 적용함
 - 공론화 용역비에는 시민참여단 구성·운영(안 제13조), 여론조사(안 제17조), 시민참여단 수당(안 제19조), 의제숙의단의 워크숍·숙의 프로그램의 운영·시민참여단의 토론회 등 공론화 실시(안 제22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됨

[표 6] 공론화 용역비용의 추가재정소요: 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소계
공론화 용역비용	2,471	2,4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공론화위원회 운영비용(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6조)

- 공론화위원회 운영비용은 다음의 3개 공론화위원회(신고리 5·6호기 공론화촉,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촉, 연금개혁 공론화촉)의 전체 예산집행액 대비 운영비 비중(23.74%)을 적용하여 추정한 운영비용(839백만원)을 2026년(3분의 2)과 2027년(3분의 1)으로 나누어 배분함

- (추계결과) 공론화위원회 운영비용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7] 공론화위원회 운영비용의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소계
공론화위원회 운영비	회의참석수당(A)	225	—	—	—
	공론화 용역비용(B)	2,471	—	—	—
	위원회 운영비용 [C=23.74%×(A+B)(1-23.74%)]	839	—	—	—
연도별 배분액			559	280	8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화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1억 8,300만원, 2027년 3억 5,200만원 등 2년간 총 35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회의참석수당	153	72	225
공론화 용역비	2,471	—	2,471
공론화위원회 운영비	559	280	839
합계	3,183	352	3,535

주: 본 추계는 국가기관 차원에서 설치·운영한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기본소득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방식 등을 다르게 적용하면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 국가기관 차원에서 설치·운영한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기법, 공론화 방식 등을 다르게 적용하면 재정소요는 추계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

참고자료

국가기관 차원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사례

구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특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특위	2022학년도 대입 제도개편 공론화특위	경인아라뱃길 공론화특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특위	연금개혁 공론화특위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가교육회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 부	연금개혁특위 (국회)
목적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사 회적 합의 도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공론화 진행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진행	아라뱃길 사업의 과거 정책의 사결 정 과정 분석 및 기능개선안 마련	제1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을 공론화 통해 재검토	연금개혁 방안 에 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 도출
운영 기간	'13.10.~'15.6 .	'17.7.~'17.10 .	'18.4.~'18.8.	'18.10.~'21.2.	'19.5.~'21.4.	'24.1.~'24.4.
위원회 구성	15명 (위원장1명 포함)	9명 (위원장1명 포함)	7명 (위원장1명 포함)	15명 (위원장1명 포함)	15명 (위원장1명 포함)	11명 (위원장1명 포함)
회의 횟수 (전체회의)	4회(2013년) 25회(2014년) 9회(2015년)	14회(2017년)	14회(2018년)	6회(2018) 12회(2019) 11회(2020) 1회(2021)	16회(2019년) 24회(2020년) 3회(2021년)	9회(2024년)
분과 과제	운영소위(5명)	법률분과(2명) 조사분과(2명) 숙의분과(3명) 소통분과(2명)	조사분과(2명) 숙의분과(2명) 소통분과(2명)	물환경생태(4명) 거버넌스(5명) 물류(2명) 관광레저(3명)	운영분과(5명) 의제분과(5명) 숙의분과(5명)	숙의분과(3명) 조사분과(2명) 소통분과(1명)
시민 대표단	- (대표단 없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	500명 (시민참여단)	550명 (시민참여단)	120명 (지역시민)	596명 (전국시민참여단) 165명 (지역시민참여단)	500명 (시민대표단)
공론화 (용역비)	실시 (625백만원)	실시 (2,603백만원)	실시 (1,800백만원)	실시 (1,001백만원)	실시 (3,297백만원)	실시 (2,463백만원)
활동 결과	2만 7천여명의 의견 바탕 10개 권고사항 도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등 권 고안 도출	대학입학제도개편 권고안 도출	주운기능 축소, 문화관광 확대 등 권고사항 도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8개 정책 권고사항 도출	연금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정책 반영 여부	제1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 수립('16.7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17.10월)	권고안등 반영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및 고교교육 혁 신방향」 발표 ('18.8월)	공론화특위 이 행을 위해 후속 연구용역(기능 개선방안 연구 용역) 시행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 수립 ('21.12월) 고준위 특별법 추진 및 제정 ('25.3월)	연금개혁의 방향 에 대한 공감대 형성
예산 집행액	77.5억원	37.3억원	18.3억원	10.2억원	53.5억원	25.2억원